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1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1. 개정안 조문대비표	1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8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2024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소관 25개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 및 기상청 소관 1개 법률에 규정된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하 “파산자”라 함)를 제외하려는 것임.

[표] 결격사유 정비 대상 자격·허가

○ 환경부 소관(25개 법률, 44개 자격·허가)

법률명	관련 조문	대상 자격·허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	전문정비사업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
먹는물관리법	제16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제24조	먹는물샘물등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물샘물등 수입판매업
		먹는물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제48조	먹는물관련영업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63조	폐수처리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
소음·진동관리법	제42조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검사대행자
수도법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악취방지법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사육시설등록자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
지하수법	제23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제26조	폐기물처리업
		전용용기 제조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하수도법	제19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제20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8조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환경분쟁 조정법	제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	환경영향평가업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통합허가대행업

○ 고용노동부 소관(7개 법률, 9개 자격·허가)

법률명	관련 조항	대상 자격·허가 등
고용보험법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공인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직업안정법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제38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자파견사업

○ 기상청 소관(1개 법률, 1개 자격·허가)

법률명	관련 조항	대상 자격·허가 등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기상사업

결격사유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로, 그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공익적 필요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결격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격별·허가별로 그 성격과 취득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되나, 다수의 법률에서는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 ③ 해당 자격·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④ 해당 자격·허가 등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공통적으로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산자의 경우 행위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¹⁾에서도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통해 파산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4개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파산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최소화하여 그에게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사기파산죄²⁾ 등 범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해당 자격·허가 등을 취득할 수 있어 업무 수행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고, 해당 자격·허가 등과 관계된 업무를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자격·허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못할 수 있고, 부적격자가 자격·허가를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자격·허가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공공성·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것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자격·허가 등이 환경오염 예방, 국민건강 보호 등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자를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에도 공인노무사³⁾와 같이 공정한 업무수행이 중요하게 요구되거나 타인의 고용관계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허가 등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자격·허가 등에 요구되는 공공성·신뢰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자격·허가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재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거래상의 신뢰를 확보하고 파산자가 해당 자격·허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로부터 다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셋째, 파산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사법상 대리인, 수임인 등이 될 수 없어 사법상의 자격 제한이 존재하므로,⁴⁾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3) 주된 업무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는 등이 있음

4)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허가 등의 경우 파산자의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넷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이들 위원회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⁵⁾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즉,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⁶⁾ 이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도 파산자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격·허가에 요구되는 공공성·신뢰성의 정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보장 필요성, 개인파산제도의 도입 취지,

5)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행정심판법」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거래상의 신뢰 또는 재산상의 신용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환경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는 각각 환경 분야 및 고용노동 분야의 특성상 자격·허가 등에 높은 수준의 공공성·신뢰성이 요구되므로, 현행과 같이 각종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자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개정안 조문대비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u>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 ----- ----- ----- ----- ----- ----- ----- ----- ----- ----- ----- ----- ----- ----- ----- <u>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u>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u>	③ ----- ----- <u>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는 <u>하나</u>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4. (생략) 5.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 19. (생략)

② (생략)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 7. (생략)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
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
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1조제1호·제3호-----
-----.
-----제31조제1호·제3호 또
는 제4호-----

-----.

16.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
제31조제1호·제3호-----
-----.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생략) ② (생략)	-----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u>제1호 또는 제2호</u> 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까지</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4조(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5. ----- ----- <u>제1호</u> ----- ----- ----- ----- 6. -----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u> -----.

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u>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략) ② ~ ⑦ (생략)	----- ----- ----- ----- -----<u>제2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생략) ⑤ ~ ⑨ (생략)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 ----- ----- -----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1. <u>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공인노무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 8. (생략)	제4조(결격사유)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직무보조원) ①·② (생략)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1조(직무보조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0.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 -----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 ----- -----

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기상산업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략)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의2. (생략)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 -----. -----제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

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생략) ② ~ ④ (생략)	----- -----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대기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9조의2(결격 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제1호----- -----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4. (생략)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제3호 또는 제

<u>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법인	<u>4호</u> ----- ---
------------------------------------	------------------------

○ 먹는물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결격 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5. ----- ----제1호----- -----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u>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u> 3. ~ 6. (생략)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 물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8조의7(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 <u>제1호</u> ----- ----- -----
5.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3조(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u>제63조제1호·제2</u>	3. ----- ----- <u>제63조제1호</u> -----

<u>호</u>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 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u>제63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양 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 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 ----- ----- --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 ----- -----<u>제63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② (생략)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이 항 <u>제1호</u> 또는 <u>제2호</u>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 <u>제1호</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u>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 8. (생략)	5. <u>제14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u> <u>터 제5호</u>----- ----- 6. ~ 8. (현행과 같음)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3. (생략) ⑦ ~ ⑩ (생략)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인 2. 3.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 -----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 ----- -----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략) ②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2조제1호·제3호</u>----- -----. -----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석면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또는 제3호----- -----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3제1호 또는 제4호----- -----.

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6. (생략) ②·③ (생략)	----- ----- ----- ----- -----.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석면피해구제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3. (생략) ⑤ ~ ⑦ (생략)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2조(결격 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제1호--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수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4. (생략)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 ⑤ (생략)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5. -----제 24조제2항제1호-----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4. (생 략)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u>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u>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 ⑥ (생 략)	<u>터 제5호</u>-----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4. (현행과 같음) 5. ----- -<u>제25조의2제2항제1호</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제1호----- ----- -----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u>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9. (생략) ②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1조의3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u>-----. ----- ----- ----- -----.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악취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 -----제1호----- -----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 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 ① ----- ----- ----- ----- ----- ----- -----.

야 한다. 1. ~ 5. (생략) 6. <u>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생략)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6조의5제1호·제3호 또는 제5호</u>-----. ----- ----- ----- -----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생략)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3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 ----- ----- ----- ----- ----- 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3호----- -----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 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u> 3. 4.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 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4. (현행과 같음)
--	--

○ 지하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4. ----- -----. -----제2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

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8.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u>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u>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략)	----- ----- ----- -----.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 ----- -----. 1. <u>제23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2. -----<u>제23조제1호</u>----- ----- ----- 3. (현행과 같음)
--	---

○ 직업안정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u>제38조제1호·제2호·제4호</u>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 ----- ----- <u>제38조제1호·제4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8조(결격사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6호까지</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 <u>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u> ----- -----

○ 토양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제1호-----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u>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⑦ (생략)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⑧ ----- ----- <u>제26조제1호·제3호·제4호</u> ----- -----. ----- ----- -----.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결격 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5의2. (생략)	3. ~ 5의2. (현행과 같음)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6. ----- <u>제1호</u> , <u>제3호부터 제5호</u> ----- ----- -----

구조문대비표

– 52 –

○ 하수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의3(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9조의3제1호·제3호----- -----. -----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

-----.
-----제19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19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3. (생 략)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
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제1호-----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의3제1호·제3호-----
-----.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생 략)

② (생 략)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

-----.

제20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20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결격사유) -----

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제1호-- ----- ----- -----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48조제1호·제3호-----
--	---

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 13. (생 략)

② (생 략)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
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0.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제48조제1호·제3호-----
-----.

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1. ~ 15. (생략) ② (생략)	----- ----- -----.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화학물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 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제1호-----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제1호 또는 제3호----- -----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1. ~ 4. (생략)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u>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u>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 -----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 ----- ----- -----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 ----- ----- ----- ----- ----- ----- -----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⑥ (생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제1호----- -----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생략)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생 략) <u>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u> 3. ·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4. (현행과 같음)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4. (생략)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⑤ (생략)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4. (현행과 같음)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④·⑤ (현행과 같음)

○ 환경분쟁 조정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 4. (생략)	제9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 환경영향평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5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제1호----- ----- -----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의 자격이 취소(이 항 <u>제1호</u> <u>또는 제2호</u>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 <u>제1호</u>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1조의3(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 <u>제1호</u> ----- ----- ----- ----- 4. (현행과 같음) 5. -----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